

서울특별시 마포구 북한이탈주민 정착지원에 관한 조례안 심사보고서

2019. 7. 23.
행정건설위원회

1. 심사경과

- 가. 제안일자 및 제안자 : 2019.7.17. 신종갑 의원 외 7명
- 나. 회부일자 : 2019.7.18.
- 다. 상정일자 : 제232회 임시회 제1차 행정건설위원회 (2019.7.23.)
상정, 심사, 의결

2. 제안설명요지 【제안설명자 : 신종갑 의원】

가. 제안이유

우리구에 거주하는 북한이탈주민의 지역사회 적응과 생활편익 향상을 도모하고, 마포구민의 일원으로 정착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것임.

나. 주요내용

- 조례 제정의 목적 및 정의 규정(안 제1조, 안 제2조)
- 지원대상(안 제3조), 구청장의 책무(안 제4조)
- 북한이탈주민 및 북한이탈주민 가정에 대한 지원범위(안 제5조)
- 북한이탈주민지원 지역협의체 설치 등에 따른 기능
(안 제6조 ~ 안 제10조)
- 지원단체에 대한 지원(안 제11조)
- 비밀엄수의무 등(안 제13조)

3. 검토보고(전문위원 유준상)

○ 본 제정조례안은 신종갑 의원 외 7인에 의해 발의되어 행정건설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으로 「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」 제22조(거주지보호) 제2항, 「서울특별시 북한이탈 주민의 정착지원에 관한 조례」 제13조(업무의 위임 및 위탁) 제1항에 근거하여 북한이탈주민이 지역 사회에 원활히 정착할 수 있도록 지원근거를 마련하고자 하는 것으로 총 14개의 조문과 부칙으로 구성되어 있음.

○ 주요내용을 살펴보면

- 안 제1조부터 안 제2조에서는 조례 제정의 목적과 용어의 정의를 규정 하였으며,
- 안 제3조에서는 지원대상을 규정하였고
- 안 제4조에서는 조기정착 지원과 생활실태조사 실시에 관한 구청장의 책무를 규정하였으며,
- 안 제5조에서는 지원의 범위와 예산지원을 규정하였으며,
- 안 제6조부터 제10조에서는 북한이탈주민지원 지역협의회 설치에 따른 기능, 위원장의 직무, 구성의 내용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으며,
- 안 제11조에서 지원단체에 대한 지원 사항을 규정하였고,
- 안 제12조부터 안 13조에서는 사무의 위탁, 비밀엄수를 규정함.

○ 검토의견으로는

본 제정조례안은 「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」을 근거로 제정되는 것으로써 해당 법률에서는 통일부 장관의 권한 중 일부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자치단체 장에게 위임하도록 규정하고 있고,

대통령령에서는 통일부장관의 권한 일부를 특별시장·광역시장·도지사에게 위임하도록 규정하여 자치구별 지역협의회 구성·설치 및 운영에서 문제점을 보완하고 세부적인 지원 사항을 조례 제정을 통해 규정함으로써 현 정부의 평화통일정책을 뒷받침 할 것으로 판단됨.

- 북한이탈주민들의 지역사회의 안정적인 정착은 인도주의적 차원에서도 중요하기 때문에 북한이탈주민에 대한 정확한 실태 파악과 실질적 지원 방안 모색 등을 위해 구 실정에 맞는 체계적 지원 정책을 수립·시행이 필요할 것으로 사료됨.

다만, 북한이탈주민들은 우리와 살아온 환경이 다르기 때문에 과도한 배려와 관심은 또 다른 문제점이 발생할 수 있으므로 생색내기 보다는 마음으로 다가가는 것이 중요할 것임.

4. 질의 및 답변요지 : 생략

5. 토론요지 : 없음

6. 심사결과 : 원안가결

7. 기타 소수의견의 요지 : 없음

8. 기 타 : 없음